

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32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8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」 개정으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및 운영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 봉사 활동 기회를 넓혀 노인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봉사지도원 위촉, 업무,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 221,760천원 반영(비용추계서 별첨)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1. 7. 1. ~ 2021. 7. 21.(20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부서협의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- 가) 중앙부처 :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
 - 나) 경기도 : 노인복지과

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지역봉사지도원)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
2.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노인장애인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노인장애인과장 이 회 숙
	팀 장 직위·성명	노인복지팀장 장 윤 석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사회복지서기 이 태 혁(☎2205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7조의2(지역봉사지도원) ① 시장은 <u>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</u> 2. <u>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 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p>③ 시장은 <u>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